'ESCO사업 계약관련 규정 중'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의 주요내용'

Q.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펴낸 ESCO사업 안내서중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ESCO사업 계약관련 규정 중'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의 주요내용'
'대가지급(26P)'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경비별 지침의 '관서운영비'중 공공요금과 유류비에 집행 근거규정 신설이라고 나오던데요.
'세출예산 집행지침 (5.관서운영비, 7.공공요금, 8.유류비)'
이 부분은 무엇을 근거로 삼은 것인가요? 가령 계약의 근거를 [재정경제부 회제 41301-1787('98.7.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계약체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회신']에서 찾은 것처럼 질의회신이라던지 그런 근거는 없나요? 아니면 ESCO사업의 공공부문 적용 에너지절약 성과배분계약 중 대가지급의 근거를 만들기 위해 '관서운영비' 중 공공요금과 유류비에 집행 근거규정을 신설했다는 말인가요?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A. 공공부문의 ESCO사업은 국가계약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69조 3항에 의거 장기계속 용역계약 형태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재정경제부 회제 41301-1787(1998.7.2) '에너지절약 성과배분 계약체결 가능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이렇게 계약이 체결된 에너지절약 용역사업의 대가지급을 위해 경비별 지침의 '관서운영비' 중 공공요금과 유류비에 집행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참고로 에너지절약용역사업은 국가계약법상의 에너지절약 성과배분(ESCO)계약의 적용 명칭임)

Q. 실적 증명서의 실적은 어떻게 산출되는 것입니까?

A. ESCO 실적증명서는 산업자원부 예규 9호 "에너지절약 용역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2001. 3. 27)에 근거 합니다. 에너지 절약용역사업에 대한 입찰 제출용으로 우리공단에서는 ESCO의 최근 3년간 실적과 장비현황을 ESCO들에게 발급합니다. 투자실적의 내용은 "당해년도를 포함해 최근3년간 실적(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자금 '절약전문기업투자사업분' 지원금 중 인출기준으로 하되 당해년도는 전분기 말까지 추천기준) 및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인정하는 사업"에 한하여 실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기마다 발행을 하며 ESCO들에게 우편으로 한부씩 발행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ESCO 투

독자 여러분의 엽서나 메일을 받습니다.

ESCO지가 독자 여러분의 참여폭을 확대하기 위하여 ESCO에 대한 각종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제보하실 사항, 잡지를 읽어보신 소감 등을 적어보내 주십시오. 특히 ESCO협회의 홈페이지(www.esco.or.kr) 게시판 및 「공지사항」 란을 이용하시면 원하시는 답변을 더욱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글은 편집상 일부 수정될 수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실 곳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7
문래에이스테크노타워 702호
ESCO 편집자 앞
TEL : (02)2679-6464
FAX : (02)2632-7566
w3master@energycenter.co.kr

자실적 증명서 발급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재발급을 합니다.

Q. 공장에서 구내식당을 운영 하는 사람입니다 메이커에 상관없이 설치 시 지원 자금이 있다고 하던데 해당 사항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A. 문의하신 공기열원 히트펌프 냉난방기에 대한 자금지원 안내입니다.
* 공기열원 히트펌프 자금지원 조건으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표준난방조건(영상7℃)에서 COP 2.9이상이고, 저온난방조건(영하8.5℃)에서 COP 2.0이상인 것(시험방법은 KS C 9306에 준함)에 한하여 지원하며, 건물 각실 또는 각층에 설치되는 공조기(실내기) 및 배관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의 시험결과가 기준조건을 만족한 모델에 대하여 자금지원이 되고 있으며 자금지원이 100% 전액 되는 것이 아니고 부가세별도인 계약금액 중 실내기에 대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의 80% 자금 지원이 됩니다(중소기업 확인된 업체 및 비영리법인인 경우 90% 우대적용).

**Q. 저희 회사가 중국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한 보일러 판넬(기름보일러)을 경산 공장에서 엑셀 보일러(기름보일러)와 함께 같은 조건의 환경에서 실험실을 만들어 여러 차례 실험한 결과 기존 엑셀 보일러의 기름 소모량에 비해 65% 이상의 에너지 절감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OEM 방식으로 중국에서 대량 생산을 준비하고 한국의 판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공단의 자금 지원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과 절차가 있어야 합니까?**

A. 현재 보일러에 대해 자금지원이 되는 경우는 기존 보일러를 교체하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단, 설치년수가 산업용은 5년 이상, 건물용은 7년이상 경과한 것이어야 하며, 기존 보일러 용량의 2배를 초과하지 않고, 전기보일러가 아닌 것으로 개체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절차는 공단으로부터 추천서를 발급받은 후 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설치자금중의 일부를 융자받게 되며 신청은 공단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만 받고 있습니다(예산한도내에서 선착순 접수마감).
추천비율 및 대상 등에 관한 일반적인 절차는 공개자료실(1027번) "2006년 에너지자금지원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인터넷 접수는 공단 홈페이지 "전자민원-자금추천신청"의 "온라인신청요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에너지관리공단의 자금추천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금융기관의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을 장기저리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 자금추천서가 있는 경우, 공사중 ESCO의 계약 행위(예:공사준공담보)에 대한 사고책임을 공단에서 보증해 주는 것인지?

A. 우선, '자금 추천'은 공단이 자금 신청인에게 자금 지원조건 및 대출범위 등을 정하는 것을 말하며, 대출은 공단과 대여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계약당사자인 에너지사용자와 ESCO간에 이루어진 사적계약에서 발생된 문제로, 해당내용에 대한 책임은 공단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또한, 공단의 자금추천서가 없으면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의 이용이 불가합니다.